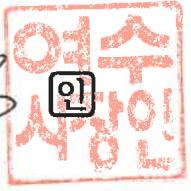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결산검사위
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 2 월 / 일

여수시장 2021. 2. 26. 

여수시 조례 제1785호

불임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1부.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을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17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수시”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수시의”를 “시의”로, “관련있”을 “관련 있”으로, “시의 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을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로, “설명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때에는 시의회의”를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다.

제8조 중 “시장 및”을 “여수시장 및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 의견서의 제출)”을 “(검사의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 간에”를 “위원 중에서”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을 “사람이 있는 경우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을 “수당 은”으로, “일시불로”를 “한꺼번에”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만료이후 시의회의**”를 “**만료 이후**”로, “**시의회에**”를 “**의회에**”로, “**때에는 일비를**”을 “**때에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출장 시에는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여수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이내로 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5인이내의 위원은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인과 의회의원이 아닌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4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적임자를 추천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p>	<u>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p> <p>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p> <p>--- 운영 등에 -----.</p> <p>-----.</p> <p>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p>

<신 설>

②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여수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여수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

-----.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17일 -----
-. -----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

② 시의 ----- 관련 있
-----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
속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
-----.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 총괄-----
----- 설명하
----- 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의 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6. (생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같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

③ -----
----- 없을 때에는 -----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각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다.

제8조(검사협조) 여수시장 및 시 -----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 제84조제3항에 따라 -----

----- 위원 중에서 -----
----- 사람이 있는 경우 그 -----
-----.

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와 같이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 한꺼번에 -----.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만료 이후 ----- 의회에 ----- 때에도 수당을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 출장 시에는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 .

<p>현금</p> <p>[별표]</p>	<p>기정안</p>
<p>결산검사위원회 일별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p>	<p>결산검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p>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
결산검사위원회	200,000원

구 분	지급액
결산검사위원회	200,000원